

특집논문

백년전쟁과 왕국의 개혁, 그리고 정치체에 대한 권리
- 14세기 정치적 담론장 파리를 중심으로* -

홍 용 진

- I. 들어가며
II. 14세기 전반기 전쟁과 정치사회
III. 백년전쟁의 시작: 전쟁의 항구화
IV. 파국에서 개혁으로
V. 나가며: 정치체에 대한 권리

I. 들어가며

백년전쟁(1337-1453)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합국가를 확고하게 만든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통합국가의 등장은 두 가지 현상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필리프 4세(Philippe IV le Bel, 1285-1314)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가체제(système de l'État)의 확립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전역에 걸친 일종의 민족감정(sentiment national)의 형성이었다.¹⁾ 하지만 백년전쟁이 발발할 무렵만 하더라도 국가체제는 왕국의 인민들, 보다 정확히는 정치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었고 민족감정이란 것도 실체화될 수 없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했다. 즉 프랑스라는 왕국을 단일하고도 통일적인 정치공동체로 묶어내는 활동과 불가분한 관계를 지니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적 틀은 14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7-361-AM0027).

1) Bernard Guénéé, "État et nation en France au Moyen Âge", *Revue historique*, t. 237(1967), pp. 17-30; *L'Occident aux XIV^e et XV^e siècles. Les États*(Paris: PUF, 1981), pp. 113-132; J.-P. Genet, "La France est-elle née dans la guerre?", *La guerre de Cent Ans*(Fayard Pluriel, 2012), pp. 146-157.

세기 전반기까지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매우 힘들었다. 그보다는, 1314년 12월 필리프 4세의 사망 직전에 발발한 귀족동맹 봉기가 잘 보여주듯이 봉건사회의 특징인 지방분권적인 특권(자율권)과 지방적인 차원의 정체성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²⁾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백년전쟁이 종식될 무렵 프랑스의 국가체제와 민족감정의 형성은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뚜렷한 정치·사회적인 현상이 되어 있었다. 특히 1439년에 신봉회의의 동의를 거쳐 샤를 7세가 반포한 오를레앙 칙령은 전쟁과 조세를 동력으로 삼는 국가체제가 얼마나 프랑스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³⁾ 물론 이러한 민족감정의 형성과 국가체제의 확립은 단순히 왕권의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권력행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적이고 지방적 정체성이 강했던 프랑스 사회가 프랑스 전체에 걸친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관심사를 모을 것을 전제했다. 이는 다시 공통적인 여론의 장 또는 공론장 형성과 이 여론의 장에 대한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두 가지 부분적 과정들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통치에 대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여론의 장⁴⁾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이는 프랑스 왕국이 봉건사회(société féodale)에서 정치사회(société politique)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두 번째는 정치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의 형성으로서 정치사회의 주

2) André Artonne, *Le mouvement de 1314 et les chartes provinciales de 1315*(Paris, 1912).

3) 1439년 11월 2일에 반포된 오를레앙 칙령은 샤를 7세의 상비군 유지와 이에 필요한 항구적 재정 유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G. Minois, *Charles VII. Un roi shakespearien*(Perrin, 2005), pp. 390-394; B. Bove, *Le temps de la guerre de Cent Ans 1328-1453*(Paris: Belin, 2009), pp. 448-454.

4) '장(champ)'에 대한 가장 간명한 설명으로는 P. Bourdieu, L. J. D. Wacquant, *Réponses. Pour une anthropologie réflexive*(Paris: Seuil, 1992), pp. 71-90, 특히 72-73. '장' 개념의 중세사 적용에 대해서는 J.-P. Genet, "La genèse de l'État moderne. Les enjeux d'un programme de recherch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n° 118(juin 1997), pp. 3-18; *La genèse de l'État moderne. Culture et société politique en Angleterre*(Paris: PUF, 2003), pp. 261-305.

5)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라는 용어에 대응하여, 레몽 카젤(Raymond Cazelles)이 자신의 저서들에서 국가 형성시기의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카젤의 두 주저는 *La société politique et la crise de la royauté sous Philippe de Valois*

역들이 왕권이 주도하던 통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단계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1358년 국정 전반을 장악하려고 했던 파리 시장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다.⁶⁾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과정들은 어떻게 프랑스가 14세기 초의 봉건적 왕국에서 15세기 후반의 국가로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할 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두 문제들이 된다.

이 둘 중에서 먼저 정치장의 형성과 정치사회의 형성은 이미 필리프 4세가 대플랑드르 전쟁과 대교황 정책을 통해 국왕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프 4세가 일방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과하려던 전쟁준비와 재정문제, 국왕 재판권의 문제들은 14세기 초 이래로 많은 반발과 저항을 필리프 4세 주위에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가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정치장과 정치사회 형성의 주요한 핵심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두 번째 과정이다. 즉,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정치사회의 구성원들은 통합적인 국가체제에 대해서 무관심이나 거부, 또는 저항이 아닌 개입과 장악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을까? 물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표지가 되는 사건은 1358년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지 에티엔 마르셀 개인의 돌발적인 의지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로 대변되는 “정치(체)에 대한 권리”⁷⁾ 요구는 좀 더 장기적인 호흡의 과정 속에서 바라볼

(Paris, 1958);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Bon et Charles V*(Genève, 1982). ‘정치사회’에 대한 보다 개념적 소개로는 Philippe Contamine, “Le concept de société politique dans la France de la fin du Moyen Âge: définition, portée et limite”, S. Berstein et P. Milza (dir.), *Axes et méthodes de l'histoire politique*(Paris: PUF, 1998), pp. 261-271.

6) 성백용, 「14세기 초반 프랑스 왕정의 화폐 정책과 사회적 갈등」, 『서양중세사연구』 제10호(2002), 57-93쪽; 박용진, 「중세 말 프랑스 왕권과 파리의 부르주아」, 『서양중세사연구』 제20호(2007), 67-92쪽.

7)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 『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태원 옮김(후마니타스, 2011) 참조. 발리바르는 이 책에서 잠재적인 인권을 실현할 시민권이 없는 이주자들, 즉 불법체류자들에게 정치체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당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는 한 정치공동체의 공식적인 승인과 무관하게 그 공동체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본 글에서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체)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원래 프랑스어로는 “*Droit de Cité*”라고 표기되는데, 옮긴이의 표현대로 이때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글은 백년전쟁 초기 전쟁의 양상과 이에 대한 프랑스 정치사회의 반응 및 대응을 1340년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II. 14세기 전반기 전쟁과 정치사회

1340년대 프랑스 정치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세기 전반기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전쟁들과 정치적 상황 사이의 관계를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이 추진하고 있는 왕국 전체에 걸친 국가체제 확립시도와 이에 대한 지방분권적 봉건사회 구성원들의 저항이었다. 물론 이러한 저항의 과정 속에서 봉건사회 구성원들은 좋건 싫건 간에 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규모의 전쟁과 조세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과 태도들을 표출하였고 이는 프랑스에서 봉건사회가 정치사회로 변화해 가도록 자극하였다. 특히 문제는 국가체제라는 기계의 주도권이 왕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연료는 정치사회의 유·무형적 지원(세금과 지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두 정치세력들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였다. 그중 하나는 국가체제를 왕국 전체에 걸쳐 가동시키려고 하는 왕권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필요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정치사회의 대표자들이었다.

부분적이거나 또는 간헐적으로나마 정치사회의 대표자들이 왕권에게 국가체제의 가동을 허용한 때는 무엇보다도 전쟁이 발발할 때였다. 1300년대 초부터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왕국 전체를 로마시대의 ‘조국(Patria)’ 개념을 부활시켜 정서적으로 아우르고자 했고 자신의 권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전쟁을 왕국 전체가 동원되어야 할 전쟁으로 선전하였다.⁸⁾ 12세기 말 이래로 북부 프랑스에서 프랑스왕과 질긴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플랑드르 지역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프랑스왕에 대한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통적인 귀족세력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르주아를 비롯한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플랑드르인들은 프랑스왕권이 플랑드르 지역 및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려는 시도에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Cité”는 ‘도시(city)’라기보다는 ‘정치체(polity, political body)’를 의미한다.

8) E.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pp. 232-272.

1297년부터 1322년까지 필리프 4세와 루이 10세, 필리프 5세까지 프랑스 왕권은 플랑드르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조세(전쟁 보조세)를 거두고자 했고 이를 위해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집하였다. 통상 ‘신분회의(assemblée des états)’라 불리는 이 회의체는 사실 1302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보편권력에 맞서서 개별적인 프랑스 왕국 대표자들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과시하기 위해 필리프 4세가 처음으로 소집하였다.⁹⁾ 그러나 곧 1303년부터 필리프 4세는 플랑드르와의 전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회의를 개최해야 했다. 이후 필리프 5세(Philippe V le Long, 1316-1322) 치세에도 신분회의는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전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¹⁰⁾ 이제부터 과세와 화폐개주는 신분회의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되었고 특히 왕권은 ‘화폐 전문가들(experts des monnaies)’이라고 하는 부르주아 대표들을 수시로 소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14세기 프랑스에서는 전쟁과 국가재정, 과세와 신분회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 관계는 당연하거나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필요한 때에만 동원되는 임시방편이었다. 따라서 왕권은 이러한 ‘예외적인 필요성(necessitas)’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항구화시키고자 했다.¹¹⁾ 하지만 이 당시 정치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왕은 자신의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le roi doit vivre du sien)”라는 담론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¹²⁾ 전통적인 봉건적 심성에 따르면 좋은 국왕은 신민들에게 재물을 베푸는 자이지 빼앗는 자가 아니었다. 선물과 증여로 국왕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과시하는 것

9) 이는 근대적인 국가의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대의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우에 서로 다르게 등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초의 형태에 있어서 잉글랜드 의회(Parliament)는 자발적인 귀족 회의체인 위탄게모트에 더 가깝다면 1302년에 소집된 프랑스 신분회의는 오히려 성직자들의 공의회 모델에 근접해 있는 듯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홍용진, 프랑스 필리프 5세 통치 시기 정치적 문제들과 왕권의 대응, 『서양중세사연구』 제29호(2012.3), 101-127쪽.

11) Jaques Krynen, *L'empire du roi, Idée et croyances politiques en France XIII^e-XV^e siècle*(Paris: Gallimard, 1993), pp. 270-273. 이 논리는 필리프 드 보마뉴아르의 『보베지의 관습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필요의 경우(casus necessitatis)”에 근거를 둔다.

12) Lydwine Scordia, *Le roi doit vivre du sien. La théorie de l'impôt en France (XIII^e-XV^e siècles)*(Paris, 2005).

은 그가 왕으로서 도량이 큰 사람이라는 관대함(générosité)을 보여주는 도덕적 평가와도 직결된다.¹³⁾ 그런 만큼 예외적인 경우에 과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모두와 관계된 것은 모두에게 검토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라는 담론에 따라 정치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했다.¹⁴⁾ 물론 이 담론은 과세를 시행하는 국왕에게 무거운 정치윤리적 책임을 부과하지만 사실 일단 동의된 과세에 대한 정치사회의 개입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약점을 내포한다. 왕권이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과세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동의를 받은 과세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가 끝나면 당연히 과세나 정책도 중단시켜야 했다. 이러한 주장은 “원인이 소멸하면 결과도 소멸한다(Cessante causa, cessat effectus)”라는 담론으로 보충되었다.¹⁵⁾

이상과 같은 정치담론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국가체제가 아직 항구적인 통치체도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더러 병렬적인 지방공동체의 집합인 왕국(royaume)이 단일하고 통일적인 국가(État)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치사회는 왕권이 제기하는 중앙집권적 정책들과 재정 확충안에 대해 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1333년부터 1337년까지 필리프 6세가 추진한 전쟁준비인 십자군 준비의 경우 두드러졌다. 1335년 2월 3일 랑그도일 부르주아 44명을 소집한 신분회의에서 제안된 십자군 보조세는 당대 부르주아들에게 어떠한 당위성도 인정받지 못했다.¹⁶⁾

13) Jacques Le Goff, “Roi”, Jacques Le Goff & Jean-Claude Schmitt (dir.), *Dictionnaire raisonné de l'Occident médiéval*(Fayard, 1999), p. 992.

14) Yves M.-J. Congar, « 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orbari debet », *Revue historique de droit français et étranger*, n° 2(1958), pp. 210-259 ; Jacques Krynen, *L'empire du roi*, pp. 273-281.

15) 즉 과세의 원인인 전쟁이 종식되면 전쟁의 결과물인 과세 또한 철폐된다는 의미이다. Elizabeth A. R. Brown, “Cessante causa and the Taxes of the Last Capetians: The Political Applications of a Philosophical Maxim”, *Studia Gratiana*, Vol. 15(1972), pp. 577-581; André Gouron, “Cessante causa cessat effectus: à la naissance de l'adage”, *Comptes-rendu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 lettres*, 143^e année, n° 1(1999), pp. 299-309.

16) R. Cazelles, *La société politique*, p. 129; J. B. Henneman, *Royal Taxation in Fourteenth Century France. The Development of War Financing 1322-1356* (Princeton, 1971), p. 335.

III. 백년전쟁의 시작: 전쟁의 항구화

1336년 8월 초 교황 베네딕투스 12세의 지원 철회로 필리프 6세의 십자군 원정 계획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다른 한편 여러 중층적인 요인들(기엔 주권문제, 플랑드르 경제문제, 왕위계승문제 등)의 복합적인 상승작용으로 1337년부터 훗날 백년전쟁이라 불릴 기나긴 전쟁상황이 시작되었다. ‘백년전쟁’이 실제로 백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본격적인 무력충돌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전쟁 초기에는 일종의 외교전과 대리전, 국지전들이 펼쳐졌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기독교 세계 내에서 경쟁관계들을 이용하여 자국의 동맹세력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경계지역에서는 소소한 국지전들을 펼쳐나갔다. 필리프 6세는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공략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플랑드르 부르주아들은 곧장 에드워드 3세를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하며 탈프랑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또한 1341년에는 브르타뉴 공작 장 3세가 사망하자 장 3세의 여조카인 잔 드 팡티에브르(Jeanne de Penthièvre)와 그의 이복동생인 장 드 몽포르(Jean de Montfort) 사이에 브르타뉴 공위계승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는 곧 각각의 배우자들, 즉 블루아 백작 샤를(Charles de Blois) 및 네베르 백작의 딸 잔 드 플랑드르(Jeanne de Flandre)와 연관되어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의 대리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전쟁 초기에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는 아직 본격적인 전투가 발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상의 상황들이 각국에 가하는 재정적 부담은 막중했다. 동맹을 구축하는 데에도 막대한 로비 자금이 동원되어야 했고 비록 소소하다 할지라도 국지전 비용 또한 누적되면서 큰 부담이 되어 갔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측 모두 전례 없는 규모의 전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결국 에드워드 3세는 피렌체 상인가문인 페루치(Peruzzi) 가문과 바르디(Bardi) 가문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¹⁷⁾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전비 마련이 그리 쉽지 않았다. 필리프 6세는 화폐개주와 전쟁보조세 징수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고

17) 남종국,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근대 자본주의와 혁신의 기원』(엘피, 2015), 366-369쪽.

했는데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는 무척 힘들었다. 전쟁이 일어나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정치담론은 재정이 확보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필리프 6세의 입장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순환논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1339년 9월 에드워드 3세는 먼저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플랑드르 원정을 감행하였다. 캄브레 공성전을 시작으로 에드워드 3세의 군대는 슬뤼스(Sluis) 해전, 투르네 공성전, 생토메르 공성전에서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프랑스군에 대해 승승장구하였다. 그리고 에드워드 3세의 원정은 정복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수반하였다. 1340년 초까지 이어진 에드워드 3세의 플랑드르 원정기간 동안 필리프 6세는 과세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정확한 일자를 알 수는 없지만 에드워드 3세의 원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1339년에서 1340년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서 전쟁 보조세와 관련된 신분회의들이 개최되었다([표 1] 참조).¹⁸⁾ 1340년 필리프 6세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지만 원정 자금이 바닥난 에드워드 3세는 승자의 입장에서 필리프 6세에게 휴전을 제의했고 1340년 9월 15일 에플레셴(Esplechin)

[표 1] 1339-1340년 필리프 6세가 전쟁보조세와 관련하여 소집한 신분회의

개최연도	개최장소	참가자
1339	?	피카르디의 귀족대표들
1339	퐁트드메르 (Pont-Audemer)	노르망디의 성직자, 귀족, 도시대표들
1339-1340	?	랑그도크 도시대표들
1340.03.05	아미앵(Amiens)	아르투아 도시대표들

18) R. Cazelles, *La société politique*, p. 129; M. Jussellin, “Comment la France se préparait à la guerre de Cent Ans”,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chartes*, t. 73(1912), pp. 230-232(appendice V); A. Coville, *Les États de Normandie: leurs origines et leur développement au XIV^e siècle*(Paris, 1894), pp. 43, 257(Appendice II); Cl. Devic, J. Vaissete, *Histoire générale de Languedoc*, t. 9, pp. 517-519 (LIII. Subsidies dans la Province, pour la guerre contre le roi d'Angleterre) & t. 10, col. 880-888 (n. 342. Articles présentés aux commissaires du roi par la noblesse de la Province); Ch. Hirschauer, *Les états d'Artois de leurs origines à l'occupation française, 1340-1640*(Paris et Bruxelles, 1923), t. 1, pp. 13-14 & t. 2, p. 7(Appendice I); J. B. Henneman, *Royal Taxation*, pp. 122-123.

에서 2년간의 휴전 조약이 체결되었다. 휴전은 프랑스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필리프 6세에게 휴전은 또 다른 전쟁의 준비를 예고하는 것이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과세의 명분은 사라졌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1340년대에 들어와 프랑스에서 전쟁의 의미는 시간적 차원에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봉건사회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전쟁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1340년대에 전쟁은 이제 예견되고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 되어 갔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필리프 5세(1316-1322)가 처음으로 표명한 것이지만¹⁹⁾ 본격적인 현실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2년의 휴전기간 동안 필리프 6세는 1343년의 휴전의 종식과 더불어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 새로운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십자군 관련 세금들과 1340년의 전쟁보조세를 거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과세명분은 수용되지 못했고 이에 신분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필리프 6세는 1341년부터 랑그도크 지역에 염세(gabelle) 징수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1343년부터는 왕국 전체에 걸쳐 염세를 확대해 나가고자 했다. 간접세인 염세는 화폐개주와 더불어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휴전 종료일인 1343년 6월 이후로 잉글랜드군의 프랑스 침입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²⁰⁾ 하지만 브르타뉴 공위계승전쟁이 친프랑스파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국경 각지에서 국지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프 6세는 전쟁을 대비해야만 했다. 강한 비판과 저항에도 염세는 징수되었으며 화폐개주가 병행되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정치사

19) 필리프 5세는 즉위 초부터 플랑드르 반란에 시달렸는데 1318년 7월에는 교황 요하네스 22세의 중재로 플랑드르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협정 직후 필리프 5세는 휴전 기간 만기일(1319년 4월 8일) 이후 재개될지도 모를 전쟁을 걱정하면서 4차례의 지방신분회를 개최하고 전쟁보조세를 징수하고자 했다. H. Hervieu, *Recherches sur les premiers états généraux et les assemblées représentative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quatorzième siècle*(Paris, 1879), pp. 140-147; Ch. H. Taylor, "Assemblies of Towns and War Subsidy, 1318-1319", J. R. Strayer & Ch. H. Taylor, *Studies in Early French Taxation*(Cambridge, 1939), pp. 115-116, 149-166.

20) 이 당시 에드워드 3세는 브르타뉴 공위계승전쟁에 직접 개입했지만 전황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1343년 1월 19일 말레트루아(Malestroit)에서 에드워드 3세와 필리프 6세는 브르타뉴 문제와 관련해서 3년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양자 사이에 휴전기간은 연장되었지만 필리프 6세는 1346년에 발생할지 모르는 잉글랜드의 침략을 대비해야만 했다.

회 대표자들은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까? 오직 필리프 6세만이 선견지명을 갖고 '아둔한' 신민들을 정력적으로 설득한다고 봐야 할까? 여기에서 국왕의 시선이 아닌 인민의 시선으로 눈을 돌려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프랑스라는 왕국에 대해 아무런 애착심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즉 아직 프랑스 민족감정과 같은 것을 마음속에 지니지 못한 사람들에게 애국심 따위를 기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더구나 브르타뉴 공위가 친잉글랜드파에게 넘어간다면 한들 무슨 문제인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브르타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당장의 인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잉글랜드왕의 침입인가, 아니면 현재 징수될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프랑스왕의 과세인가?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공간과 시간과 관련하여 왕권과 정치사회가 전혀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공간적 차원에서 왕권이 이끄는 국가체제는 왕국의 전 영토에 걸쳐 일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노르망디나 피카르디에 대한 위협은 단지 노르망디나 피카르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왕국 자체의 문제가 되며 따라서 프랑스 왕국의 일부인 랑그도크 지방들 또한 이 문제를 공유해야 했다. 다른 한편 시간적 차원에서 전쟁이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것으로 늘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과세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국가체제는 '필요한 경우'에 존재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적으로 영속적인 필요성(perpetua necessitas)²¹⁾을 자신의 본성으로 지녀야 한다. 요컨대 왕권의 입장에서는 왕국이 공간적 단일성(unité)과 시간적 영속성(perpetualité)을 담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1340년대 프랑스인들의 정치적 경험의 결과들은 이러한 생각 또는 이러한 국가적 시·공간 감수성이 이들에게 얼마나 낯선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IV. 파국에서 개혁으로

1. 1346년 잉글랜드의 대프랑스 원정

1343년 말레트루아 휴전조약은 전쟁을 멈추기보다는 유예시켰다. 그것은

21) E.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pp. 284-291.

전쟁의 재개라는 불안한 미래의 그림자를 여전히 깊게 드리웠다. 이는 필리프 6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전쟁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에 대한 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곧이어 프랑스에서는 전비를 더욱 확보하려는 필리프 6세 정부의 무리한 정책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휴전은 전쟁 못지않은, 아니 어쩌 보면 그보다도 더한 정치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군다나 바로 이 시기부터 백년전쟁 기간 내내 프랑스를 괴롭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인 용병출신의 비적대들이 프랑스 전역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휴전과 더불어 필리프 6세는 같은 해 3월 초 “원인이 소멸하면 결과도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 추진하려던 징세계획을 철폐해야 했다.²²⁾ 이에 필리프 6세는 재정을 충당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결국 1343년 3월 20일 염세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염세의 항구화·전국화 시도는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북부 프랑스(랑그도일) 지역에서 여론은 국왕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부르주아 중심의 동부파와 그에게 비판적인 노르망디 중심의 서부파로 갈라졌고 국왕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은 몇몇 노르망디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란은 곧 진압되었지만 일부 반란군은 아예 에드워드 3세의 진영으로 넘어가기도 했다.²³⁾ 남부 지역에서도 각 도시대표들이 염세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고 파리대학 철학 교수인 장 뷔리당(Jean Buridan) 또한 파리대학 대표로서 염세를 강력히 비판하였다고 전해진다.²⁴⁾

1343년 8월에 개최된 신분회의는 결국 필리프 6세에게 어떠한 재정충당 방안도 확보해 주지 못한 채 과세, 화폐개주, 염세 모두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1344-1345년 동안 필리프 6세는 정부는 전쟁준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22) Devic, Cl., Vaissette, J., *Histoire générale de Languedoc*, t. 10(Toulouse, 1885), n. 365: 필리프 6세가 잉글랜드와의 휴전으로 몽플리에 주민들에게 부과된 새로운 보조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툴루즈 세네살에게 보낸 편지(1343년 3월 12일, 생제르맹양례); C. Compayré, *Études historiques et documents inédits sur l'Albigois, le Castrais et l'ancien diocèse de Lavaur*(Albi, 1841), p. 425: 같은 내용으로 알비에 보낸 편지.

23) R. Cazelles, *La société politique*, pp. 157-163; A. Valée-Karcher, “Jeanne de Bourgogne, épouse de Philippe VI de Valois: une reine maudite?”,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chartes*, vol. 138(1980), pp. 94-96.

24) C. E. Du Boulay, *Historia universitatis parisiensis*, t. IV(Paris, 1668), p. 282.

수 없었다. 그 대신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중재로 아비뇽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왕위계승과 관련한 대토론회가 벌어졌다. 두 왕국의 대표들은 자국왕의 프랑스 왕위계승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결국 각자의 주장만을 확인하면서 별 소득 없이 토론회는 끝나고 말았다.²⁵⁾ 두 왕국 사이에 평화협상은 더욱 요원해져만 갔고 1345년부터 에드워드 3세는 다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필리프 6세는 재정 부족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1344년부터 1345년까지 2년 동안 필리프 6세는 정치사회 대표자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고 이들 또한 필리프 6세에게 어떠한 재정확보 방안도 허용하지 않았다.²⁶⁾ 하지만 1346년 초 에드워드 3세의 침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전쟁을 준비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신분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1346년 2월 파리와 툴루즈에서 각각 랑그도일 도시대표 신분회의와 랑그도크 도시대표 신분회의가 개최되었다.²⁷⁾ 신분회의의 결과 필리프 6세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전쟁보조세는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신분회의에 참가한 정치사회 대표자들이 전쟁의 위협에 무감각하거나 정치공동체 또는 공익(bien commun)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드디어 1346년 7월 12일 에드워드 3세의 원정군 중 약 1만 5천 병력의 선

25) K. Lettenhove, *Œuvres Froissart*, t. 18(Bruxelles, 1877), n. LIX, pp. 256-257; E. Déprez, “La conférence d'Avignon(1344). L'arbitrage pontifical entre la France et l'Angleterre”, A. G. Little, F. M. Powicke (ed.), *Essays in Medieval history presented to Thomas Frederick Tout*(Manchester, 1925), pp. 301-321; R. E. Giesey, *Le rôle méconnu de la loi salique. La succession royale, XIV^e-XVI^e siècles*, F. Regnot (trad.)(Paris: Les Belles Lettres, 2007), pp. 60-68.

26) 여기에서 존 벨 헨먼(John Bell Henneman)은 프랑스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전쟁위협 불감증”을 지적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당대인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J. B. Henneman, *Royal Taxation*, p. 190: “For the better part of five years, it had been very difficult to raise money, especially among those of the king's subjects who did not feel a sense of danger ...”

27) Laurière, E. de, Secousse, D.-Fr., *Ordonnances des roys de France de la troisième race*, t. 2, pp. 238-241: l'ordonnance du 15 février sur la gabelle et l'imposition; Cl. Devic, J. Vaissette, *Histoire générale de Languedoc*, t. IX, Liv. XXXI, ch. XVII, p. 584, n. 3; t. 10, n. 393-1; R. Cazelles, *La société politique*, pp. 173-177; J. B. Henneman, *Royal Taxation*, pp. 191-216.

발대가 노르망디 셰르부르(Cherbourg) 근처 생바스트라우그(Saint-Vaast-la-Hougue)에 상륙하였다.²⁸⁾ 이후로도 후발대의 병력을 보충 받은 에드워드 3세의 부대는 노르망디를 가로질러 가면서 26일에는 캉(Caen)을 점령하고 센강 중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8월 15일에는 파리 인근 푸아시(Poissy)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에드워드 3세는 파리를 공격하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아 9월 3일까지 칼레(Calais)에 도달하였다. 이 당시 파리는 13세기 초에 축성된 필리프 2세의 파리성벽 밖으로도 도시가 팽창한 상태에 있었고 성벽마저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즉 에드워드 3세는 군사적으로는 파리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북부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리를 정복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랐다. 또한 비용을 들여 점령한다 하더라도 필리프 6세를 따르는 귀족들로 둘러싸인 파리를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프랑스왕으로 인정을 받는 축성식은 파리가 아닌 랭스에서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서는 군이 파리를 점령할 이유가 없었다. 그보다는 향후 프랑스 침략의 교두보가 될 칼레항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보였다.²⁹⁾

에드워드 3세의 원정은 기본적으로 필리프 6세와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일종의 재판(trial)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 자신의 왕위계승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중세적 의미에서 게르(guerre)보다는 бата유(bataille)에 가까웠다.³⁰⁾ 그러한

28) C. J. Rogers, *War Cruel and Sharp: English Strategy under Edward III, 1327-1360*(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00), pp. 217-237; A. Ayton, "The Crécy Campaign", A. Ayton & P. Preston (ed.), *The Battle of Crécy, 1346*(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05), pp. 35-107; "The English Army and the Normandy Campaign of 1346", D. Bates, A. Curry (ed.), *England and Normandy in the Middle Ages*(London: The Hambledon Press, 1994), pp. 253-268.

29) J. Favier, *Guerre de Cent Ans*(Fayard, 1980), pp. 105-109.

30) 두 용어의 구분에 대해서는 조르주 뒤비, 『부빈의 일요일』, 최생열 옮김(동문선, 2002), 166-175쪽. 뒤비에 따르면 "모든 бата유는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질서로 이끌며,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린다."(175쪽). '게르'와 'бата유'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크 블로크 또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와 관련하여 필리프 6세에게 일종의 결투재판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르크 블로크, 『기적을 행하는 왕들』, 박용진 옮김(한길사, 2015), 26-28쪽. B. Schnerb, "Bataille", Cl. Gauvard (dir.), *Dictionnaire du Moyen Âge*(Paris: PUF, 2002), p. 136; B. Bove, *Le temps de la guerre de Cent*

차원에서 1346년 에드워드 3세의 프랑스 원정은 바로 280년 전에 발생했던 1066년 노르망디 공작 기욤 2세의 잉글랜드 원정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즉 1346년 에드워드 3세의 원정은 누가 더 우월한자인가를 가리기 위한 결투심판을 도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필리프 6세가 이에 걸맞은 뚜렷한 대응을 보여줄 때까지 에드워드 3세는 노르망디와 피카르디 지역에 대한 처참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고 다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리프 6세가 프랑스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³¹⁾

7월 17일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의 원정 소식을 접한 후 22일 생드니 수도원에 가서 결연하게 붉은 왕기(oriflamme)를 치켜들고 루앙으로 향했으나 이렇다 할 전투(bataille)를 치를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의 원정군이 파리를 공격할 것을 대비했으나 8월 중순 잉글랜드군이 푸아시에서 칼레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잉글랜드군을 추격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8월 26일 3만 명에 이르는 필리프 6세의 군대는 크레시(Crécy)에서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의 에드워드 3세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잉글랜드 사상자가 300명이 안되었던 반면 프랑스의 사상자가 약 2천 명이나 되었으며 전투에 참가했던 대귀족들 또한 죽음을 면치 못했다.³²⁾ 대승을 거둔 에드워드 3세는 바로 다음 날 약탈을 감행하며 칼레로 진격하였고 드디어 9월 3일 칼레 시에 당도했다. 이제 잉글랜드의 보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시작한 에드워드 3세는 9월 4일부터 1년에 걸쳐 칼레 공성전을 펼쳤다. 필리프 6세는 칼레 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1347년 8월 칼레 시는 잉글랜드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에드워드 3세는 승전보를 올리며 10월에 칼레를 떠나 12일 잉글랜드에 도착했다.

Ans, p. 69.

31) A. Plaisse, *À travers le Cotentin: La grande chevauchée guerrière d'Édouard III en 1346*(Cherbourg: Isoète, 1994), pp. 39-69.

32) 이들 대귀족들 중에는 필리프 6세의 동생인 알랑송 공작 샤를 2세와 그와 사돈 지간이었던 보헤미아 왕이자 룩셈부르크 백작인 요한 1세, 블루아 백작 루이 드 샤틀용, 로렌 공작 라울, 플랑드르 백작 루이 드 당피에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패전의 결과: 1347년 총신분회의

1346년 크레시 전투의 패배는 필리프 6세는 물론 전통적인 프랑스 귀족들에게 믿지 못할 치욕이었다. 물론 제대로 된 작전과 충분한 준비도 없이 잘 정돈된 잉글랜드군에게 무작정 돌격한 프랑스군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공격은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미 전력에 있어서 잉글랜드군과 프랑스군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크레시 전투는 서양 전쟁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크레시 전투에서 죽은 자들은 수많은 프랑스의 개개 봉건귀족들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죽음을 통보받은 것은 전통적인 봉건기사들의 전쟁방식이었다. 크레시 전투는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강력한 돌파력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가해 전쟁을 이끌어 가는 방식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최초의 전투였다. 충분히 숙련되고 잘 조직된 대형을 유지한 장궁부대의 위력은 서양 전쟁에서 원거리 투사무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³³⁾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망디의 봉건 기사들은 앵글로색슨 보병부대를 격파하며 자신의 시대를 선포했다면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봉건 기사들은 잉글랜드의 궁병들에게 대학살을 당하며 종말을 고했다. 아울러 크레시 전투는 엄격한 군령에 따라 대형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은 군대가 각자의 무용을 과시하며 휘몰아치는 전사들의 무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³⁴⁾

크레시 전투가 프랑스 기사귀족층들에게 남긴 파급력은 전쟁기술의 차원에

33) B. Bove, *Le temps de la guerre de Cent Ans*, pp. 82-84. 잉글랜드군은 여기에 대포를 비롯한 다양한 발사체 무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P. Contamine, *La guerre au Moyen Âge*(Paris: PUF, 1980), p. 261.

34) 물론 프랑스도 체노바 출신의 석궁 용병부대를 막대한 재정으로 고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잉글랜드군에 대해 프랑스군은 기사도적인 용맹함을 내세우며 대책 없이 언덕을 향해 돌진했다. 이 당시 프랑스군과 체노바 용병들은 장거리 행군 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체노바 용병들은 보급마차에서 자신들의 방패도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프랑스 기사들에 의해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잉글랜드군의 주력은 무거운 갑옷을 갖춘 기사들이 아니라 가벼운 갑옷을 착용한 장궁부대였다. 특히 이들은 백년전쟁 발발 이전까지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와의 전투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잉글랜드 장궁(long bow)의 위력과 사거리가 당시의 일반적인 석궁보다 우월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기사귀족층의 정치적·사회적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³⁵⁾ 위신의 하락은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자부심만 가득한 프랑스 귀족들이 평민출신의 잉글랜드 장궁 및 보병부대에 의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다는 점이다. 귀족이 평민에게 지거나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였던 시대에 크레시 전투는 프랑스 기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닥친 처참함 패배는 세 위계 이데올로기에서 ‘싸우는 자들(bellatores)’이 지닌 자부심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즉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수치심의 차원을 넘어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 귀족이 지닌 정치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가 심각하게 의심받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출행량을 친 국왕과 대 귀족들은 과연 자신들이 외치는 정치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 갈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국왕은 세금만 거둘 줄 알았지 싸울 줄도 다스릴 줄도 모르는 자가 아닌가? 이는 프랑스 정치사회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공하였다.

1347년 11월 30일에는 수도 파리에서는 총체적인 난국³⁶⁾에 처한 왕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신분회의가 개최되었다. 물론 필리프 6세는 더 이상 정국을 이끌 여력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다. 이제 정국의 주도권은 왕국의 개혁을 요구하는 신분회의의 대표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세자 장(Jean)이 바로 부왕을 대신하여 정국을 이끌 새로운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흥미롭게도 신분회의의 참가자들은 과거처럼 전쟁 준비와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최대한 억제하려는 입장만을 고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 참여했고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사료는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신분회의는 필리프 4세 이후로 처음으로 전 왕국의 모든 세 신분 대표들이 소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결의된 주요한 두 가지 사항은 예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화폐가치의 복구 및 국고를 충당하기 위한 전쟁보조세 징수였다. 즉 재정충당 편법인 화폐개주를 저지하

35) F. Autrand, “The Battle of Crécy: A Hard Blow for the Monarchy of France”, *The Battle of Crécy, 1346*, pp. 273-277.

36) 1346년 크레시 전투 이후로 프랑스의 입장은 동맹세력들의 패배로 더욱 악화되었다. 필리프 6세의 가장 큰 동맹인 스코틀랜드왕 데이비드 2세(David II, 1329-1371)는 10월 17일 네빌스 크로스(Neville's Cross)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고 1347년 6월 20일에는 브르타뉴 공위계승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던 샤를 드 블루아도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다.

는 대신 신분회의 참가자들이 과세에 흔쾌히 동의한 것이었다. 불과 4년 전 신분회의에서 화폐개주와 과세 모두를 거부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커다란 변화의 지점은 사실 과세 동의에 대한 조건으로 부르주아들이 제시한 사항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부르주아 대표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지못해 과세에 동의하고 귀족들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지 않았다. 이들이 과세시행과 관련하여 제시한 조건은 바로 신분회의에서 선출한 자들이 조세징수와 재정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348년에는 개혁을 상징하는 새로운 귀족대표들의 이름-마티외 드 트리 2세, 아모리 드 뫼랑, 조프루아 드 샤프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까지 국상(chancelier)을 담당하던 기욤 플로트(Guillaume Flote)는 신분회의의 압력으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347년 신분회의는 당대의 어법인 ‘개혁(réforme)’을 내세우면서 정치사회의 합의를 통한 공익(bien commun)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³⁷⁾

1347년의 신분회의는 분명히 이전과 달랐다. 신분회의의 대표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이제 국가재정에 대한 개입을 공익과 개혁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도에서 국가체제는 이제 왕정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정치참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단순한 납세에서 정치체에 대한 권리 요구로 진일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는 이 당시에 등장한 몇 권의 정치윤리서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세자장에게 헌정된 『도덕으로 본 장기』(*Jeu des Échecs morlaisés*)에서 왕은 공동체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한 요소로 설명된다.³⁸⁾

그렇지만 1347년 신분회의는 뜻밖의 사태로 일시적으로만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³⁹⁾ 본래의 개혁을 장기적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 바로

37) R. Cazelles, *La société politique*, pp. 216-229; J. B. Henneman, *Royal Taxation*, pp. 227-238.

38) C. S. Fuller, *A Critical Edition of Le Jeu des Échecs moralisés* translated by Jehan de Vignay, Thèse de doctorat (Dissertation Ph.D.) de la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dir., J. P. Wiliman(Washington D. C., 1974).

39) 존 벨 헨먼은 이 시기를 ‘대 전쟁보조세’의 시대라 칭한다(각주 30 참조). 이 시기에 신분회의의 협력으로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필리프 6세는 몽플리에 시(市)와 도피네 지역을 매입하여 왕국의 지리적 공간을 더욱 통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1348년부터 1349년까지 흑사병이 창궐하여 프랑스 인구 절반 이상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시작된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은 또 다시 과세와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1350년에 왕위에 오른 장 2세는 이후 1340년대의 파괴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만 했다.⁴⁰⁾ 그러면서 정치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더 깊게 중앙정부의 정치적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후로 국가체제와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라는 정치공동체(respublica)의 형성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갔다.

V. 나가며: 정치체에 대한 권리

중세 프랑스 신분회의 운동과 관련하여 중세사학자 에르베 마르탱(Hervé Martin)은 카페왕조 시기 프랑스사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되었고 무거운 과세부담을 초래했는데도 어떻게 신분회의가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어떠한 주도권도 지니지 못했고 오히려 국왕이 주요하게 지지를 기대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회의는 어떻게 대의제적 의식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을까?”⁴¹⁾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이 제기하는 프랑스 정치 및 사회의 급격한 변동을 1340년대에 시작된 대잉글랜드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14세기 전반기에 프랑스 왕권은 ‘공익’ 또는 ‘정치공동체’ 차원의 전쟁을 내

40) 세자 시절에는 개혁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 2세는 왕위에 오르자 새로운 왕위계승권자인 나바라왕 샤를 2세(Charles II)의 도전과 그를 중심으로 왕국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나바라공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샤를 2세는 루이 10세의 딸로 숙부인 필리프 5세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나바라 여왕 잔 2세의 아들이었다. 즉 그 또한 에드워드 3세와 마찬가지로 모계계로 카페왕조 혈통이었다). 1350년대 전반기 신분회의 개혁만 매우 요원한 상태에서 1356년 잉글랜드의 세자인 웨일즈공 에드워드가 기엔 지역에서 프랑스 원정을 시작하였고 9월 19일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크레시 전투 이후로 다시 한 번 커다란 참패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장 2세는 부왕과 달리 도주하지 않고 잉글랜드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후 다시 한 번 신분회의 운동이 전개되고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로 이어지게 된다.

41) François Menant, Hervé Martin, Bernard Merdrignac et Monique Chauvin (dir.), *Les Capétiens. Histoire et dictionnaire 987-1328*(Paris: Robert Laffont, 1999), p. 840.

세우면서 국가재정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는 왕국 내 정치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쟁보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신분회의의 개최로 이어졌다. 하지만 왕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또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전쟁으로 납득하지 못한 신분회의의 대표자들은 왕의 과세 시도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해 왔다. 이들은 전쟁과 조세와 관련한 국가체제의 전국적 단일성과 운영의 영속성이라는 시·공간적 특성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국가체제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13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필요한 경우'의 장기화로 이어졌다. 휴전은 전쟁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준비기간을 의미했다. 즉 프랑스왕국은 이제 전쟁을 실제로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국가로 진입하는 문턱을 넘기 시작했고 이렇게 준비된 전쟁은 언제나 국가적 차원의 전쟁이었다.

1346년 잉글랜드의 프랑스 원정과 1347년의 신분회의는 프랑스에서 국가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크레시 전투는 향후 근대전의 핵심이 될 발사무기의 중요성을 예고하면서 기존의 봉건적 기사들을 무력화시켰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왕과 귀족들의 정치적 무능함으로 여겨졌고 이때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계층들의 적극적인 국정개입 요구로 이어졌다. 즉 1347년의 신분회의는 과세에 대한 거부가 아닌 과세에 대한 통제를 처음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봉건사회가 정치사회로 변화해 갔다는 것을, 또 정치사회의 관심이 지방주의적 성격을 탈각하고 중앙의 정치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와 급격한 사회변동, 흑사병, 끝없는 전쟁과 민생파탄이라는 파국의 연쇄 속에서 이제 정치에 대해 권리가 없던 자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라는 정치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투고일자 2016. 1. 21 심사일자 2016. 2. 6 게재확정일자 2016. 2. 11〉

주제어 : 백년전쟁(Hundred Years' War), 크레시 전투(Battle of Crecy),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 정치체에 대한 권리(Right to Polity), 신분회의(Assembly of Estates), 수도 파리(Paris as Capital), 정치적 담론장(Field of Political Discourses)

〈국문초록〉

백년전쟁과 왕국의 개혁, 그리고 정치체에 대한 권리: 14세기 정치적 담론장 파리를 중심으로

홍 용 진

본 논문의 목적은 14세기 전반기 프랑스왕국에서 봉건사회에서 정치사회로 이행의 문제를 1346년의 크레시 전투 패배와 1347년 신분회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14세기 초반 하더라도 전쟁과 조세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가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국가체제가 전제하는 전국적 단일성과 체제의 영속성은 정치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전쟁준비를 요구하는 백년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필리프 6세의 프랑스 왕정은 신분회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과세의 정당성은 전쟁의 발발에 있었기에 전쟁 발발 전에 준비를 위한 과세는 부당한 정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연패, 특히 1346년 크레시 전투의 패배에서 보여준 왕과 귀족의 무능력함은 정치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1347년의 신분회의 때부터 프랑스 정치사회 구성원들은 왕권 주도의 국가체제를 넘어서 신분회의를 통해 국가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신분회의는 과세에 대한 거부가 아닌 과세에 대한 통제를 처음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봉건사회가 정치사회로 변화해 갔다는 것을, 또 정치사회의 관심이 지방주의적 성격을 탈각하고 수도 파리는 중앙의 정치무대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와 급격한 사회변동, 흑사병, 끝없는 전쟁과 민생파탄이라는 파국의 연쇄 속에서 이제 정치에 대해 권리가 없던 자들이 공동의 정치공동체라는 정치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Résumé〉

Guerre de Cent Ans, réforme du royaume et droit à la *respublica*: Paris, champ de discours politiques au XIV^e siècle

Yong-Jin HONG

Le but de cet article consiste à examiner concrètement la transition de la société féodale à la société politique par rapport à la défaite de la bataille de Crécy en 1346 et à l'assemblée des états réunie en 1347. Au début du XIV^e siècle, le système de l'État fonctionnant autour de la guerre et de l'impôt est considéré comme limité au cas nécessaire exceptionnel. Alors, l'unité et la perpétuité présupposées par le système de l'État ne pouvaient pas obtenir aucune légitimité stable de membres de la société politique. Dans ce contexte, avec le commencement de la guerre de Cent Ans demandant la préparation de long terme, le gouvernement de Philippe VI s'affronta le défi sévère de l'assemblée des états. Comme l'imposition ne pouvait être justifiée que par l'éclatement de guerre, le préparation de la guerre avant l'éclatement était envisagée comme politique injuste. Pourtant les défaites successives de la France, surtout l'incapacité du roi et des nobles révélée à la défaite de la bataille de Crécy fournit aux membres de la société politique un bon motif pour leur nouveau mouvement politique. À partir de l'assemblée des états en 1347, ils commencèrent à essayer d'intervenir activement au gouvernement étatique au delà de l'initiative royale. Particulièrement, cette assemblée montre une grande importance historique: par rapport à l'imposition, elle n'insista plus le refus mais le contrôle. Ce phénomène signifie que la société féodale se transforme en société politique pour de bon en France et que les intérêts de la société politique furent concentrés à la scène centrale autour du capital Paris en se dégageant le caractère régionaliste. À la situation d'une série de catastrophes des crises économiques et sociales, de la Peste noire, de la guerre chronique et de l'échec de la vie populaire, les démunis du droit politique ont commencé à demander le droit à la politique sur la base d'un affect politique pour une *respublica* en commun.

〈Summary〉

The Hundred Years' War, the Reform of the Kingdom and the Right to Polity: Paris, Field of Political Discourse in the 14th Century

Yong-Jin H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concretely the transition from the feudal society to the political society around the defeat of the Battle of Crecy in 1346 and the assembly of the states in 1347. At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the state system operating around the war and the tax is considered limited to exceptional and necessary cases. So, the unity and the perpetuity presupposed by the state system could not get no stable legitimacy of members of the political society. In this context, with the beginning of the Hundred Years War, calling for the preparation of long-term, the government of Philip VI faced the severe challenge of assembly of the states. As taxation was justified only by the outbreak of war, the preparation before the outbreak of war was seen as unjust policy. Yet the successive defeats of France, especially the inability of the king and nobles revealed in the defeat of the Battle of Crécy provides members of political society a good reason for their new political movement. From the assembly of the states in 1347, they began to try to actively intervene in state government beyond the royal initiative. Specifically, this assembly show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axation, it no longer insisted the refusal but the control. This phenomenon means that the feudal society turns into political society for good in France and that the interests of political society were concentrated the central scene around the capital Paris, disengaging the regionalist character. In the situation of a series of economic disasters and social crises, the Black Death, chronic war and the failure of life of people, the deprived of political right began demanding the right to Policy based on a political affect for a *respublica* in common.